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후계어업경영인 지정 취소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육성사업¹⁾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울산광역시도 「농어업경영체법」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이하 “사업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표1]과 같이 어업인후계자 98명, 전업경영인 44명 등 총 142명을 선정하여 6,392백만원의 용자와 경영능력 향상 전문교육 지원, 정부정책 및 경영향상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선정기준 및 지원사업

- 선정기준 :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
- 지원사업
 - 단계별(어업인후계자 100백만 원, 전업경영인 200백만 원, 선도우수경영인 : 300백만 원)로 어업기반시설자금 용자(이차보전, 용자조건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수산계 대학의 전문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경영능력 향상 전문교육 지원
 - 후계어업경영인 교육(지자체, 민간단체) : 시·도별 수산사무소 및 민간단체(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활용하여 후계어업경영인 대상 정책 및 경영향상 교육

[표1]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및 융자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42	6,392	98	3,899	44	2,493	-	-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협은행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관리대상자(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계어업경영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현지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후계어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15년말, '16년말 및 '17년말에 융자취급 기관인 ○○은행과 합동으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2]와 같이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사망, 어업정지 60일 이상 등의 사유로 '16년 9명 '17년 1명 등 총 10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되었으나,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격자 10명에 대한 후계어업경영인 지정을 취소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2] 후계어업경영인 현지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현황

연도	성명	구분	선정연도	취소사유	비고
2016	○○○	어업인후계자	2014	타업 종사	지정 취소
	○○○	어업인후계자	1995	어업정지 60일	"
	○○○	어업인후계자	2004	타업 종사	"
	○○○	어업인후계자	2007	도시 이주	"
	○○○	어업인후계자	2011	타업 종사	"
	○○○	어업인후계자	1995	사 망	"
	○○○	어업인후계자	2014	타업 종사	"
	○○○	어업인후계자	2004	도시 이주	"
	○○○	전업경영인	2016	도시 이주	"
2017	○○○	어업인후계자	2000	타업 종사	"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주의] 후계어업경영인 지정 취소 시 관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